**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소비자**(B행)**(이하"갑"이라 한다)와 ㈜ 바디프랜드(이하"을"이라 한다)는 약정서에 기재된 안마의자(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렌탈 조건에 대한 금융리스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다음 조항에 합의합니다.**

**제 1조 - 약정의 성립시점**

"을"의 신용조사에 의해 렌탈 약정내용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을"이 "갑"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렌탈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조 - 렌탈 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을"이 "갑"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하며 렌탈기간의 종료는 의무사용기간 종료시이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Q행)개월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합니다.

**제 3조 - 상품의 인도 및 설치**

1. "갑"이 신청한 상품은 "갑"이 요청하는 장소에 인도(설치)하며 이때의 운송비는 "을"이 부담하고 설치 등록비 는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2. "갑" 또는 “갑”을 대신하여 상품을 인도받는 자는 상품의 인수(설치)완료 즉시,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신 후, 설치확인서에 서명 하셔야 하며 “을”은 본 약정서를 추후 “갑”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기로 합니다.
3. 상품의 설치 이 후 이전설치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제 4조 - 상품의 보관 및 관리 유지**

1. "갑"은 상품을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품을 항상 정상의 운용 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갑"은 "을"의 승인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 등을 하지 못함은 물론 앞면에 기록된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을"에게 주소변경 고지 없이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갑"은 상품에 부착된 "을"의 소유권 표식, 고정표식 등을 제거, 오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 5조 - 렌탈약정금/ 렌탈료 청구기준**

1. 설치 등록비는 "을"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지불해야 합니다.
2. 설치 등록비는 비환불성이므로 해약시에도 환불하지 아니합니다.렌탈료는 "갑"의 설치일자로부터 한달 뒤인 익월부터 회차분으로 결제됩니다.

**제 6조 – 위약금**

1. "갑"이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내에 임의로 해지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약금과 설치등록비, 수거물류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1설치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경우 : [월렌탈료 X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X 20%]

1)-2설치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 경우 : [월렌탈료 X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X 10%]

1. 해지, 해약의 효력은 위약금 납입 확인 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갑”이 상품과 관련하여 렌탈료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할인혜택은 의무사용기간 동안 약정을 유지함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갑”이 의무사용기간 중에 약정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위 1)항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월 렌탈료는 할인이 없는 원 렌탈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렌탈료와 관련하여 할인 또는 면제 받은 금액도 위약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제 7조 – 상품변경**

1. 임대기간중 상품을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설치 등록비 전액을 청구합니다.
2. 의무사용 기간중 상품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상품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상품이 설치된 날로부터 의무사용기간이 재적용됩니다.
4. 제품하자로 인한 상품 변경 시에는 의무사용기간 재적용을 받지 않으며 의무사용기간 이내라도 "을"은 "갑"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5. 상품 변경시 이전 상품에 대한 사용료가 완납 되어야만 타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 8 조 – 자동이체 및 채권의 신탁(양도)**

1. "갑"은 "을"과 체결하는 렌탈약정서에 월렌탈료가 납기일에 자동이체 출금되도록 은행명(카드명), 계좌번호(카드번호) 및 예금주(회원)등의 사항을 기재 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에 의하여 월 렌탈료를 수령한 경우 "을"은 "갑" 에게 별도의 입금 확인증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3. "을"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갑"은 납기일 이전에 "을" 에게 그 취지를 알려 상호 협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을”은 본 약정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렌탈료와 위약금(및 분실료) 등 렌탈료 채권을 신탁회사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신탁(양도)할 수 있고, 신탁(양도) 시 “갑”에게 신탁(양도)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양도)의 경우, 렌탈료의 지급은 신탁회사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하기로 합니다.

**제 9조 - 상품의 불량이나 하자**

1. 상품 설치 후, 7일이내의 불량이나 하자 발생 시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7일 이후 상품의 이상이 발생될 경우 “을”의 서비스 부서에서 처리 하기로 합니다.
2. "갑"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은 각 부품별 소비자 가액에 따라 수리비용을 "갑"이 부담합니다.
3.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는 불가능하며 상품 설치 후 7일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 소정의 설치등록비 및 수거물류비가 부과됩니다. (설치이후 7일 이내 입금 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품 종류에 따라 발생되는 설치등록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 10 조 - 분실료 청구 기준**

1. "갑"이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Q행)개월 이내 분실할 경우 "을"이 정한 방식 (제품 판매가) - [(제품 판매가 / (Q행) 개월) X 사용개월수]으로 "갑"은 "을"에게 분실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상품의 완전 파손 및 압류 시에도 상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11 조 - 주소변경의 고지의무**

"갑"은 "을"로부터 상품을 인수한 후 주소를 변경하거나 렌탈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을"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품이전은 "을"의 의사에 따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제 12 조 - 연체료**

"갑"이 약정불입일 이내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한 각 월렌탈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연체료(년19%)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 약정의 해지**

1. 렌탈 상품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을”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갑”은 렌탈상품을 인도(설치) 받은 날로부터 최소 [39]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원칙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 약정위반으로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렌탈 약정 해지 시 해지 월의 계산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때 계산된 렌탈료의 10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4. "갑"이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할 경우 "을"은 소정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렌탈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상품의 회수는 전적으로 “을”의 권한이며 “갑”은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다만, 본항에 따라 “을”이 렌탈 약정을 해지하였음에도 “갑”이 상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연체된 렌탈료 및 상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분실료 청구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기점검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염분이나 분진과 같이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 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시거나 혹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역에서 사용 하실 경우에는 관리 및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을"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 A/S의 의무**

1.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갑”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A/S를 제공합니다. (단, 월 렌탈료가 약정한 납기일 이내에 미납될 경우에는 A/S가 중지 됩니다.)
2. 렌탈 약정기간중 "갑"의 부주의로 인한 AS 및 소모품 관련 수리나 교환의 경우에는 "을"이 실비를 부과하고 수리합니다
3. 효율적인 A/S를 위해 “을”은 A/S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자를 새로운 A/S업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 소유권 이전**

1. “을”과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간의 계약에 의거 농협에 상품의 소유권이 있으며,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부터 (Q행)개월이 경과하고 “갑”이 렌탈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을"과 농협은 "갑"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합니다.
2. 소유권 이전시 소정의 이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설치장소 변경 등에 한함)

**제 16 조 - 개인 신용 정보자료 제공**

1. “을”은 본 약정에 따른 "갑"의 신용정보 일체를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렌탈료 연체내용이나 렌탈부실거래 관련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관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갑”의 결제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렌탈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을”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전항의 정보와 동일하게 관리, 보호되며, 동의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 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하여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상관례와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 관한 법원에 제기 합니다.

**제 18 조 - 기 타**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기본 약관에 따릅니다. 본 약정의 성립은, “을”의 콜센타에서 약정과 관련된 사항을 “갑”에게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보관토록 하며, “을”이 “갑”에게 약정한 상품을 설치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또한, “을”이 “갑”에게 본 약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렌탈채권 및 상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

|  |  |
| --- | --- |
| 설치약정일 | **(I행)** |
| 성명(예금주) | **(B행)** | 주민번호 | **(D행)** |
| 설치주소 | **(E행)** |
| 전화번호 |  **(C행)** |
| 결제카드번호 | (**K행** )카드 | (**L행**) | 결제일 | **(N행)** |
| 결제계좌번호 | (**K행** )은행 | (**L행**) |

**■** 신청상품정보

|  |  |  |  |  |
| --- | --- | --- | --- | --- |
| 렌탈상품명 | 설치대수 | 1대분 월 임대료 | 약정월 | 비 고 |
| **(H행)** | 1 | **(O행)** | **(Q행)** |  |

“을”

|  |  |
| --- | --- |
| 법인명 | **(주) 바디프랜드** |
| 대표자 | **박 상 현** |
|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63 (도곡동)** | 전화번호 | **1600-2225** |

**(주)바디프랜드**

**대표이사 박 상 현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63 (도곡동)**

**02-3448-8980**